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ki-jeil.co.kr>)으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향후 당첨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및 덧신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는 경우, 견본주택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이 불가합니다.
 -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분양상담 및 상담전화(02-3431-976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내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2.18.)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청약접수 관련 :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현장접수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je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3.12.)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1. 03. 03. (수)	2021. 03. 04. (목)	2021. 03. 05. (금)	2021. 03. 12 (금)	2021. 03. 15. (월) ~ 03. 25. (목)	2021. 03. 27. (토) ~ 04. 06. (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자격확인 지참 방문접수 (10:00~17:00)	계약서류 지참 방문계약 (10:00~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9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시 방문예약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홈페이지(www.ki-jeil.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 대상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7140 (2021.02.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블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동 총 7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89세대(일반[기관추천] 49세대, 다자녀가구 49세대, 신혼부부 104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7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057	01	084.1500A	84A	84.1500	32.2366	116.3866	105.6788	222.0654	58.6545	219	21	21	43	6	32	123	96	9
		02	084.0300B	84B	84.0300	31.8417	115.8717	105.5280	221.3998	58.5709	100	10	10	20	3	15	58	42	5
		03	084.1000C	84C	84.1000	33.5821	117.6821	105.6160	223.2980	58.6197	56	5	5	11	1	8	30	26	6
		04	084.1000D	84D	84.1000	33.5821	117.6821	105.6160	223.2980	58.6197	58	5	5	11	1	8	30	28	4
		05	084.1900E	84SA	84.1900	35.0982	119.2882	105.7290	225.0172	58.6824	22	2	2	4	-	3	11	11	12
		06	084.2700F	84SB	84.2700	34.0615	118.3315	105.8294	224.1609	58.7382	20	2	2	4	-	3	11	9	7
		07	084.4500G	84SC	84.4500	35.3238	119.7738	106.0555	225.8293	58.8636	2	-	-	-	-	-	-	2	1
		08	084.9400H	84SD	84.9400	33.9462	118.8862	106.6708	225.5571	59.2052	5	-	-	1	-	-	1	4	1
		09	084.8700I	84SE	84.8700	32.9859	117.8559	106.5830	224.4388	59.1564	2	-	-	-	-	-	-	2	1
		10	084.9100J	84SF	84.9100	34.1575	119.0675	106.6332	225.7007	59.1843	3	-	-	-	-	-	-	3	1
		11	084.9400K	84SG	84.9400	33.9262	118.8662	106.6708	225.5371	59.2052	3	-	-	-	-	-	-	3	1
		12	084.9500L	84SH	84.9500	34.6491	119.5991	106.6834	226.2825	59.2121	2	-	-	-	-	-	-	2	1
		13	084.0700M	84SI	84.0700	34.8433	118.9133	105.5783	224.4916	58.5988	2	-	-	-	-	-	-	2	2
		14	084.1400N	84SJ	84.1400	35.4237	119.5637	105.6662	225.2299	58.6476	1	-	-	-	-	-	-	1	1
		15	084.1400O	84SK	84.1400	35.3437	119.4837	105.6662	225.1499	58.6476	1	-	-	-	-	-	-	1	1
		16	084.6700P	84MA	84.6700	33.5777	118.2477	106.3318	224.5795	59.0170	22	2	2	4	-	3	11	11	12
		17	084.2300Q	84MB	84.2300	33.3198	117.5498	105.7792	223.3291	58.7103	10	1	1	2	-	1	5	5	-
		18	084.7200R	84MC	84.7200	34.0023	118.7223	106.3946	225.1168	59.0518	3	-	-	-	-	-	-	3	-
		19	084.3200S	84MD	84.3200	34.1960	118.5160	105.8923	224.4083	58.7730	2	-	-	-	-	-	-	2	1
		20	084.5000T	84ME	84.5000	33.3683	117.8683	106.1183	223.9866	58.8978	1	-	-	-	-	-	-	1	-
		21	084.0200U	84HA	84.0200	32.5288	116.5488	105.5155	222.0643	58.5639	8	-	-	1	-	1	2	6	8
		22	084.6400V	84HB	84.6400	32.7390	117.3790	106.2941	223.6731	58.9961	12	1	1	2	-	1	5	7	3
		23	084.2800W	84HC	84.2800	34.0044	118.2844	105.8420	224.1264	58.7451	7	-	-	1	-	1	2	5	-
		24	101.0400A	101A	101.0400	37.8454	138.8854	126.8898	265.7752	70.4272	82	-	-	-	-	-	-	82	4
		25	101.0500B	101B	101.0500	38.4183	139.4683	126.9024	266.3707	70.4342	37	-	-	-	-	-	-	37	2
		26	101.2700C	101C	101.2700	40.9522	142.2222	127.1787	269.4010	70.5876	76	-	-	-	-	-	-	76	3
		27	101.3000D	101D	101.3000	39.8509	141.1509	127.2164	268.3673	70.6085	24	-	-	-	-	-	-	24	1
합 계											780	49	49	104	11	76	289	491	87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타입	동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계약시	중도금 (60%)						잔금 (2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09.10	2022.02.10	2022.08.10	2023.02.10	2023.06.10	2023.10.10			
084.1500A	219	84A	101동 1,3,5,7호/ 102동 1,3,5,7호/ 103동 5,7호/ 104동 1,3호/	1층	2	448,165,000	397,735,000		845,900,000	169,18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169,180,000		
				2층	4	448,165,000	402,235,000		850,400,000	170,080,000	85,040,000	85,040,000	85,040,000	85,040,000	85,040,000	85,040,000	85,040,000	170,080,000	
				3층	4	448,165,000	406,735,000		854,900,000	170,98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85,490,000	170,980,000	
				4층	4	448,165,000	411,235,000		859,400,000	171,88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171,880,000	
				5층	4	448,165,000	415,735,000		863,900,000	172,78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172,780,000	
				6~10층	51	448,165,000	424,735,000		872,900,000	174,58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87,290,000	174,580,000	
				11~20층	112	448,165,000	433,735,000		881,900,000	176,38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176,380,000	
				21층 이상	38	448,165,000	451,735,000		899,900,000	179,98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179,980,000	
084.0300B	100	84B	101동 2,6호/ 102동 2,6호/ 103동 6호/ 104동 2호	6~10층	25	447,526,000	386,974,000		834,500,000	166,900,000	83,450,000	83,450,000	83,450,000	83,450,000	83,450,000	83,450,000	166,900,000		
				11~20층	56	447,526,000	395,574,000		843,100,000	168,62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168,620,000		
				21층 이상	19	447,526,000	412,774,000		860,300,000	172,060,000	86,030,000	86,030,000	86,030,000	86,030,000	86,030,000	86,030,000	172,060,000		
084.1000C	56	84C	106동 1~11호	2층	8	447,899,000	390,301,000		838,200,000	167,640,000	83,820,000	83,820,000	83,820,000	83,820,000	83,820,000	167,640,000			
				4층	10	447,899,000	399,201,000		847,100,000	169,42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169,420,000			
				6,8,10층	28	447,899,000	412,501,000		860,400,000	172,08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172,080,000			
				12층	10	447,899,000	421,401,000		869,300,000	173,86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173,860,000		
084.1000D	58	84D	106동 1~11호	1층	4	447,899,000	385,901,000		833,800,000	166,760,000	83,380,000	83,380,000	83,380,000	83,380,000	83,380,000	166,760,000			
				3층	8	447,899,000	394,801,000		842,700,000	168,54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168,540,000			
				5층	10	447,899,000	403,601,000		851,500,000	170,300,000	85,150,000	85,150,000	85,150,000	85,150,000	85,150,000	170,300,000			
				7,9층	16	447,899,000	412,501,000		860,400,000	172,08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86,040,000	172,080,000		
				11,13층	20	447,899,000	421,401,000		869,300,000	173,86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173,860,000		
084.1900E	22	84SA	101동 14,15,16 17,19,20 21,22호/ 104동 12,17 25호	1층	3	448,378,000	393,322,000		841,700,000	168,340,000	84,170,000	84,170,000	84,170,000	84,170,000	84,170,000	168,340,000			
				2층	4	448,378,000	397,822,000		846,200,000	169,24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169,240,000			
			101동 11,12 13호	4층	7	448,378,000	406,722,000		855,100,000	171,02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85,510,000	171,020,000		
				6층	2	448,378,000	411,222,000		859,600,000	171,92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85,960,000	171,920,000		
				2층	2	448,378,000	410,522,000		858,900,000	171,78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171,780,000		
				4층	1	448,378,000	419,522,000		867,900,000	173,58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173,580,000		
084.2700F	20	84SB	101동 21호/ 104동 11,21,22 23호	1층	2	448,804,000	373,896,000		822,700,000	164,54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164,540,000			
				2층	5	448,804,000	378,296,000		827,100,000	165,420,000	82,710,000	82,710,000	82,710,000	82,710,000	82,710,000	165,420,000			
			104동 15,16 17호	3층	1	448,804,000	382,596,000		831,400,000	166,28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166,280,000		
				4층	3	448,804,000	386,996,000		835,800,000	167,16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83,580,000	167,160,000		
				5층	3	448,804,000	391,396,000		840,200,000	168,04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168,040,000		
			084.4500G	2	84SC	101동 18호	4층	3	448,804,000	399,496,000		848,300,000	169,66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169,660,000
							5층	3	448,804,000	403,896,000		852,800,000	170,56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170,560,000
							2층	1	449,763,000	373,937,000		823,700,000	164,74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164,740,000
							4층	1	449,763,000	382,837,000		832,600,000	166,520,000	83,260,000	83,260,000	83,260,000	83,260,000	83,260,000	166,520,000
084.9400H	5	84SD	101동 3호	1층	1	452,373,000	393,827,000		846,200,000	169,24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84,620,000	169,240,000			
				2층	1	452,373,000	398,327,000		850,700,000	170,140,000	85,070,000	85,070,000	85,070,000	85,070,000	85,070,000	170,140,000			
				3층	1	452,373,000	402,827,000		855,200,000	171,04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171,040,000			
				4층	1	452,373,000	407,327,000		859,700,000	171,94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85,970,000	171,940,000			
				5층	1	452,373,000	411,827,000		864,200,000	172,84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172,840,000			
084.8700I	2	84SE	104동 24호	4층	1	452,000,000	393,900,000		845,900,000	169,18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169,180,000				
				5층	1	452,000,000	398,300,000		850,300,000	170,06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170,060,000			
084.9100J	3	84SF	104동 3호	2층	1	452,213,000	384,187,000		836,400,000	167,280,000	83,640,000	83,640,000	83,640,000	83,640,000	167,280,000				
				4층	1	452,213,000	393,087,000		845,300,000	169,06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169,060,000			
				5층	1	452,213,000	397,487,000		849,700,000	169,94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169,940,000			
084.9400K	3	84SG	104동 1호	2층	1	452,373,000	385,727,000		838,100,000	167,620,000	83,810,000	83,810,000	83,810,000	83,810,000	167,620,000				
				4층	1	452,373,000	394,627,000		847,000,000	169,4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169,400,000				
				5층	1	452,373,000	399,027,000		851,400,000	170,28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170,280,000			
084.9500L	2	84SH	104동 20호	4층	1	452,425,000	388,075,000		840,500,000	168,10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168,100,000				
				5층	1	452,425,000	392,475,000		844,900,000	168,980,000	84,490,000	84,490,000	84,490,000	84,490,000	84,490,000	168,980,000			
084.0700M	2	84SI	104동 18,19호	1층	2	447,739,000	405,861,000		853,600,000	170,72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170,720,000				
084.1400N	1	84SJ	104동 14호	1층	1	448,112,000	395,688,000		843,800,000	168,76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168,760,000				
084.1400O	1	84SK	104동 13호	1층	1	448,112,000	395,688,000		843,800,000	168,76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168,760,000				

주택형	공급세대수	타입	동호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중도금 (60%)						잔금(2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09.10	2022.02.10	2022.08.10	2023.02.10	2023.06.10	2023.10.10	
084.6700P	22	84MA	102동 12,13 14호	1층	3	450,935,000	408,365,000		859,300,000	171,86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85,930,000	171,860,000
				2층	3	450,935,000	412,965,000		863,900,000	172,78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86,390,000	172,780,000
			102동 16,17,18 20,21 23호	1층	6	450,935,000	395,665,000		846,600,000	169,32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169,320,000
				2층	6	450,935,000	400,165,000		851,100,000	170,22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170,220,000
			102동 15,19 22호	1층	1	450,935,000	366,065,000		817,000,000	163,4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163,400,000
				2층	3	450,935,000	370,365,000		821,300,000	164,26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164,260,000
084.2300Q	10	84MB	102동 12,13 14호	3층	3	448,591,000	451,309,000		899,900,000	179,98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179,980,000	
			102동 17,18,20 23호	3층	4	448,591,000	437,809,000		886,400,000	177,28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177,280,000	
			102동 15,19 22호	3층	3	448,591,000	419,809,000		868,400,000	173,68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173,680,000	
084.7200R	3	84MC	102동 13호	5층	1	451,201,000	448,699,000		899,900,000	179,98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179,980,000	
			102동 17호	5층	1	451,201,000	435,199,000		886,400,000	177,28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177,280,000	
			102동 22호	5층	1	451,201,000	417,199,000		868,400,000	173,68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86,840,000	173,680,000	
084.3200S	2	84MD	102동 11호	1층	1	449,070,000	403,530,000		852,600,000	170,52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85,260,000	170,520,000	
				2층	1	449,070,000	408,030,000		857,100,000	171,42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171,420,000	
084.5000T	1	84ME	102동 11호	3층	1	450,024,000	449,876,000		899,900,000	179,98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179,980,000		
084.0200U	8	84HA	103동 13,14,16 17,20 21호	1층	2	447,473,000	387,927,000		835,400,000	167,08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167,080,000	
				2층	4	447,473,000	392,427,000		839,900,000	167,98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167,980,000	
			103동 18,19호	2층	2	447,473,000	367,227,000		814,700,000	162,940,000	81,470,000	81,470,000	81,470,000	81,470,000	81,470,000	162,940,000	
084.6400V	12	84HB	103동 11,12,15 16,20호	1층	3	450,775,000	383,425,000		834,200,000	166,84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83,420,000	166,840,000	
				2층	3	450,775,000	387,825,000		838,600,000	167,72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83,860,000	167,720,000	
				3층	1	450,775,000	392,325,000		843,100,000	168,62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168,620,000	
				4층	2	450,775,000	396,725,000		847,500,000	169,50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84,750,000	169,500,000	
				5층	1	450,775,000	401,125,000		851,900,000	170,38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170,380,000	
			103동 18호	4층	1	450,775,000	371,325,000		822,100,000	164,420,000	82,210,000	82,210,000	82,210,000	82,210,000	82,210,000	164,420,000	
084.2800W	7	84HC	103동 11,12,13 15,16 20호	3층	1	448,857,000	410,043,000		858,900,000	171,78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85,890,000	171,780,000	
				4층	2	448,857,000	414,543,000		863,400,000	172,68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172,680,000	
				5층	2	448,857,000	419,043,000		867,900,000	173,58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173,580,000	
				6층	1	448,857,000	419,043,000		867,900,000	173,58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86,790,000	173,580,000	
				103동 18호	6층	1	448,857,000	393,043,000		841,900,000	168,38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168,380,000
			101.0400A	82	101A	103동 1,3호/ 104동 5,7호	1층	2	538,117,000	439,348,000	43,935,000	1,021,400,000	204,280,000	102,140,000	102,140,000	102,140,000	102,140,000
2층	2	538,117,000					444,257,000	44,426,000	1,026,800,000	205,360,000	102,680,000	102,680,000	102,680,000	102,680,000	102,680,000	102,680,000	205,360,000
3층	1	538,117,000					449,257,000	44,926,000	1,032,300,000	206,460,000	103,230,000	103,230,000	103,230,000	103,230,000	103,230,000	206,460,000	
4층	1	538,117,000					454,166,000	45,417,000	1,037,700,000	207,54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207,540,000	
5층	2	538,117,000					459,075,000	45,908,000	1,043,100,000	208,62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208,620,000	
103동 11호/ 12호	6~10층	16				538,117,000	468,985,000	46,898,000	1,054,000,000	210,8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210,800,000
	11~20층	40				538,117,000	478,894,000	47,889,000	1,064,900,000	212,980,000	106,490,000	106,490,000	106,490,000	106,490,000	106,490,000	106,490,000	212,980,000
	21층이상	18				538,117,000	498,621,000	49,862,000	1,086,600,000	217,32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217,320,000
	7~10층	8				538,171,000	431,481,000	43,148,000	1,012,800,000	202,56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101,280,000	202,560,000
	11~20층	20				538,171,000	441,026,000	44,103,000	1,023,300,000	204,660,000	102,330,000	102,330,000	102,330,000	102,330,000	102,330,000	102,330,000	204,660,000
101.0500B	37	101B	103동 2호/ 104동 6호	21층이상	9	538,171,000	460,026,000	46,003,000	1,044,200,000	208,840,000	104,420,000	104,420,000	104,420,000	104,420,000	104,420,000	208,840,000	
				3층	3	539,343,000	386,688,000	38,669,000	964,700,000	192,94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96,470,000	192,940,000	
				4층	3	539,343,000	391,325,000	39,132,000	969,800,000	193,960,000	96,980,000	96,980,000	96,980,000	96,980,000	96,980,000	193,960,000	
				5층	3	539,343,000	395,961,000	39,596,000	974,900,000	194,98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194,980,000	
				6~10층	15	539,343,000	405,143,000	40,514,000	985,000,000	197,0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197,000,000	
				11~20층	30	539,343,000	414,415,000	41,442,000	995,200,000	199,04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99,520,000	199,040,000	
				21층이상	22	539,343,000	432,870,000	43,287,000	1,015,500,000	203,100,000	101,550,000	101,550,000	101,550,000	101,550,000	101,550,000	203,100,000	
				101.2700C	76	101C	105동 1~5호	3층	1	539,503,000	378,997,000	37,900,000	956,400,000	191,280,000	95,640,000	95,640,000	95,640,000
4층	1	539,503,000	383,543,000					38,354,000	961,400,000	192,28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192,280,000	
5층	1	539,503,000	388,088,000					38,809,000	966,400,000	193,280,000	96,640,000	96,640,000	96,640,000	96,640,000	96,640,000	193,280,000	
6~10층	5	539,503,000	397,270,000					39,727,000	976,500,000	195,300,000	97,650,000	97,650,000	97,650,000	97,650,000	97,650,000	195,300,000	
11~20층	10	539,503,000	406,452,000					40,645,000	986,600,000	197,32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98,660,000	197,320,000	
21층이상	6	539,503,000	424,725,000					42,472,000	1,006,700,000	201,340,000	100,670,000	100,670,000	100,670,000	100,670,000	100,670,000	201,340,000	
101.3000D	24	101D	105동 2,5호	3층	1	539,503,000	378,997,000	37,900,000	956,400,000	191,280,000	95,640,000	95,640,000	95,640,000	95,640,000	95,640,000	191,280,000	
				4층	1	539,503,000	383,543,000	38,354,000	961,400,000	192,28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192,280,000	
				5층	1	5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 101A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인허가 기관 최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정책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세대,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앞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앞선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1500A	084.0300B	084.1000C	084.1000D	084.1900E	084.2700F	084.4500G	084.9400H	084.8700I	084.9100J	084.9400K	084.9500L	084.0700M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84SF	84SG	84SH	84SI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1400N	084.1400O	084.6700P	084.2300Q	084.7200R	084.3200S	084.5000T	084.0200U	084.6400V	084.2800W	101.0400A	101.0500B	101.2700C	101.3000D
약식표기	84SJ	84SK	84MA	84MB	84MC	84MD	84ME	84HA	84HB	84HC	101A	101B	101C	101D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1500A	084.0300B	084.1000C	084.1000D	084.1900E	084.2700F	084.4500G	084.9400H	084.8700I	084.9100J	084.9400K	084.9500L	084.0700M	084.1400N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84SF	84SG	84SH	84SI	84SJ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	1	1	1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	-	1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	-	1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	-	-	-	-	-	-	-	-	-	-	
	우수선수	2	1	-	1	-	-	-	-	-	-	-	-	-	-	
	장애인	서울특별시	4	2	1	1	1	-	-	-	-	-	-	-	-	-
		경기도	3	1	-	1	-	-	-	-	-	-	-	-	-	-
인천광역시		2	1	-	1	-	-	-	-	-	-	-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11	5	3	3	1	1	-	-	-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0	5	2	2	1	1	-	-	-	-	-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3	2	1	1	-	-	-	-	-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3	1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16	7	4	4	2	2	-	1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5	7	4	4	1	1	-	-	-	-	-	-	-	
	일반공급 (3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6	3	2	2	1	1	-	-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6	3	1	1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12	6	3	3	2	2	-	-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1	5	3	3	1	1	-	-	-	-	-	-	-	
	일반공급 (3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5	2	1	1	-	-	-	-	-	-	-	-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4	2	1	1	-	-	-	-	-	-	-	-	-	
합계		123	58	30	30	11	11	-	1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1400O	084.6700P	084.2300Q	084.7200R	084.3200S	084.5000T	084.0200U	084.6400V	084.2800W	101.0400A	101.0500B	101.2700C	101.3000D	합계	
약식표기		84SK	84MA	84MB	84MC	84MD	84ME	84HA	84HB	84HC	101A	101B	101C	101D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	-	-	-	-	-	-	-	-	-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	-	-	-	-	-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	-	-	-	-	-	5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	-	-	-	-	-	-	-	5	
	우수선수	-	1	-	-	-	-	-	-	-	-	-	-	-	5	
	장애인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9
		경기도	-	-	1	-	-	-	-	-	-	-	-	-	-	6
인천광역시		-	-	-	-	-	-	-	1	-	-	-	-	-	5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1	1	-	-	-	-	1	-	-	-	-	-	27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	-	-	-	-	-	-	-	-	-	-	-	2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	-	-	-	-	-	-	-	-	-	-	-	7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	-	-	-	-	-	-	-	-	-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2	1	-	-	-	1	1	1	-	-	-	-	42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	1	-	-	-	-	1	-	-	-	-	-	35
	일반공급 (3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1	-	-	-	-	-	-	-	-	-	-	-	16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	-	-	-	-	-	-	-	-	-	-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7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2	1	-	-	-	1	1	1	-	-	-	-	34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	-	-	-	-	-	-	-	-	-	-	-	25
	일반공급 (30%)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	-	-	-	-	-	-	-	-	-	-	-	9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	-	-	-	-	-	-	-	-	-	-	8
합계		-	11	5	-	-	-	2	5	2	-	-	-	-	28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청약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 신청 중복으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 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시 특별공급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 분	해당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등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자녀수에는 임신 중인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하였을 때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04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를 공급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02.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5,554,984원 ~ 7,776,976원	6,226,343원 ~ 8,716,878원	6,938,355원 ~ 9,713,695원	7,594,084원 ~ 10,631,716원	8,249,813원 ~ 11,549,736원	8,905,542원 ~ 12,467,75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6,665,981원 ~ 8,887,973원	7,471,611원 ~ 9,962,147원	8,326,026원 ~ 11,101,366원	9,112,901원 ~ 12,150,533원	9,899,775원 ~ 13,199,699원	10,686,650원 ~ 14,248,866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② 무주택세대주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7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② 무주택세대주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호(2020.09.29.)]에 따릅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02.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221,479원 ~ 8,887,973원	8,094,246원 ~ 9,962,147원	9,019,861원 ~ 11,101,366원	9,872,309원 ~ 12,150,533원	10,724,757원 ~ 13,199,699원	11,577,204원 ~ 14,248,866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동일 순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를 공급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기타지역(서울 2년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신청자와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4.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세대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동·호수 배정일은 추후 통보예정)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기준을 준용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방문(견본주택) 접수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외함. 단, 신혼부부의 경우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02-3431-9760)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세대주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2.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로 공급
-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순위 : 공급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을 포함한다)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거주지역별 [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 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2년 이상 ~ 3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3년 이상 ~ 4년 미만	5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5년 이상 ~ 6년 미만	7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5년 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 ②의 처리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대구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합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03. 03.(수) - 청약 Home 인터넷 : 08:00~17:30 -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 03. 04.(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 03. 05.(금)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시」. 단, 미동의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 03. 12.(금)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 03. 27.(토) ~ 2021. 04. 06.(화) (10:00~17:00)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9 - 당첨자 서류접수시 방문일 예약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홈페이지(www.ki-jeil.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별도 통보예정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ki-jeil.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3. 12 (금) ~ 2021. 03. 21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3. 12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2.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구 분	선 정 방 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 02-3431-9760)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정 예약 후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시 방문계약일 예약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홈페이지(www.ki-jeil.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건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본인 외 1인(가족 1인 / 신원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및 추첨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3.15.(월) ~ 2021.03.25.(목) (11일간 10:00 ~17:00 까지)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9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⑥-1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⑦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⑨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당첨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⑨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⑧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⑥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2020. 02. 18 ~ 2021. 02. 18)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 03. 27(토) ~ 04. 06(목) 11일간, 10:00 ~ 17:00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9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세대 미만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하며,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기타 무주택자 확인 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3-815902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601호 홍길동: 10206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납부 일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 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보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 02. 10	입주지정일
84A	9,969,000	996,900	996,900	7,975,200
84B	3,971,000	397,100	397,100	3,176,800
84C	9,120,000	912,000	912,000	7,296,000
84D	7,642,000	764,200	764,200	6,113,600
84SA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84SB	5,967,000	596,700	596,700	4,773,600
84SC	4,429,000	442,900	442,900	3,543,200
84SD	6,462,000	646,200	646,200	5,169,600
84SE	5,640,000	564,000	564,000	4,512,000
84SF	4,341,000	434,100	434,100	3,472,800
84SG	5,764,000	576,400	576,400	4,611,200
84SH	5,867,000	586,700	586,700	4,693,600
84SI	5,361,000	536,100	536,100	4,288,800
84SJ	5,254,000	525,400	525,400	4,203,200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 02. 10	입주지정일
84SK	5,254,000	525,400	525,400	4,203,200
84MA	6,420,000	642,000	642,000	5,136,000
84MB	9,399,000	939,900	939,900	7,519,200
84MC	7,087,000	708,700	708,700	5,669,600
84MD	4,436,000	443,600	443,600	3,548,800
84ME	6,455,000	645,500	645,500	5,164,000
84HA	2,545,000	254,500	254,500	2,036,000
84HB	2,711,000	271,100	271,100	2,168,800
84HC	2,872,000	287,200	287,200	2,297,600
101A	11,736,000	1,173,600	1,173,600	9,388,800
101B	2,826,000	282,600	282,600	2,260,800
101C	4,625,000	462,500	462,500	3,700,000
101D	6,199,000	619,900	619,900	4,959,200

-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등급 또는 등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채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060256	(주)무궁화신탁 권준명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오입금, 과오납등으로 인한 환불시 별도의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안내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 02. 10	입주지정일
84A	1안	3대	거실, 안방, 주방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2안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3안	6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 알파룸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84SF 84SG 84SH, 84SI, 84SJ, 84SK 84MA, 84MB, 84MC, 84MD 84HA, 84HB, 84HC	1안	3대	거실, 안방, 주방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2안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알파룸)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84ME	1안	3대	거실/주방(4Way), 안방, 가족실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2안	4대	거실/주방(4Way), 안방, 가족실, 침실1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101A, 101B, 101C	1안	3대	거실, 안방, 주방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2안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3안	6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3(알파룸)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101D	1안	3대	거실, 안방, 주방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2안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2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제조사 및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수준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주방가전
-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 02. 10	입주지정일
LG 빌트인 냉장고 (홈바형)	택 1 전주택형	5,750,000	575,000	575,000	4,600,000
LG 빌트인 냉장고 (디스펜서)		7,650,000	765,000	765,000	6,12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84A,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84SF, 84SG, 84SH, 84SI, 84SJ, 84SK, 84MA, 84MC, 84ME, 84HA, 84HB, 84HC, 101A, 101B, 101C, 101D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	84MD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삼성 BESPOKE (냉장 + 냉동 + 김치)	84A,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84SF, 84SG, 84SH, 84SI, 84SJ, 84SK, 84MA, 84MC, 84MD, 84ME, 84HC, 101A, 101B, 101D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 ※ 삼성 BESPOKE 선택시 LG빌트인 냉장고 및 LG 김치냉장고 선택은 불가합니다.
- ※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김치냉장고 옆 키 큰 수납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김치냉장고 도어 또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 광파오븐 / 후드-하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 02. 10	입주지정일
LG 하이브리드 인덕션	전타입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광파오븐	전타입	400,000	40,000	40,000	320,000
후드-하츠	101타입 (101A, B, C, D)	800,000	80,000	80,000	640,000
현관 공기 청정시스템	전타입	700,000	70,000	70,000	560,000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84A	84B	84C	84D	84SA	84SB	84SC	84SD	84SE
현관	현관가구	3,800,000	2,500,000	-	-	-	1,800,000	-	1,800,000	1,800,000
	현관중문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현관팬트리	-	-	1,200,000	1,200,000	1,400,000	-	1,200,000	-	-
거실	아트월	1,900,000	1,100,000	1,000,000	1,000,000	1,900,000	1,100,000	2,500,000	1,100,000	900,000
	바닥폴리싱타일	2,160,000	2,110,000	2,310,000	2,310,000	1,730,000	2,110,000	2,200,000	2,320,000	2,090,000
	복도 팬트리	-	-	-	-	-	-	-	-	-
	거실 팬트리	-	-	-	-	-	-	-	-	-
침실	안방팬트리	3,700,000	3,200,000	3,200,000	3,200,000	5,000,000	3,200,000	2,900,000	2,900,000	3,200,000
	알파룸팬트리	5,500,000	-	-	-	-	-	-	-	-
	침실1팬트리	2,700,000	-	-	-	1,100,000	-	-	-	-
	침실2팬트리	-	-	1,100,000	1,100,000	-	-	-	1,200,000	1,500,000
	침실1불박이장	-	-	-	-	-	-	-	-	-
	침실2불박이장	-	2,000,000	-	-	2,000,000	2,000,000	-	-	-
	침실3슬라이딩도어	-	-	-	-	-	-	-	-	-
전동빨래건조대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5,390,000	5,390,000	5,390,000	5,390,000	4,620,000	5,390,000	4,620,000	4,950,000	4,950,000

품목		84SF	84SG	84SH	84SI	84SJ	84SK	84MA	84MB	84MC
현관	현관가구	1,800,000	1,800,000	2,500,000	-	-	-	-	1,800,000	2,500,000
	현관중문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현관팬트리	-	-	-	1,400,000	1,400,000	1,400,000	1,200,000	-	-
거실	아트월	1,100,000	1,100,000	1,1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200,000	3,200,000	1,200,000
	바닥폴리싱타일	2,110,000	2,320,000	2,110,000	1,780,000	1,780,000	1,780,000	2,110,000	2,250,000	2,650,000
	복도 팬트리	2,000,000	-	-	-	-	-	-	-	1,200,000
	거실 팬트리	-	-	-	-	-	-	-	-	1,500,000
침실	안방팬트리	5,000,000	2,900,000	3,2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4,700,000	3,700,000	3,200,000
	알파룸팬트리	-	-	-	-	-	-	-	-	-
	침실1팬트리	-	-	-	1,100,000	1,100,000	1,100,000	-	-	-
	침실2팬트리	1,200,000	1,200,000	-	-	-	-	-	-	-
	침실1불박이장	-	-	-	-	-	-	2,500,000	-	-
	침실2불박이장	-	-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침실3슬라이딩도어	-	-	-	-	-	-	-	-	-
전동빨래건조대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4,950,000	4,950,000	4,950,000	4,620,000	4,620,000	4,620,000	4,950,000	4,290,000	4,950,000

품목		84MD	84ME	84HA	84HB	84HC	101A	101B	101C	101D
현관	현관가구	-	1,800,000	2,600,000	-	-	4,000,000	-	-	-
	현관중문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현관팬트리	1,200,000	-	-	1,3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800,000	1,200,000
거실	아트월	2,300,000	3,200,000	2,300,000	1,100,000	1,100,000	1,900,000	1,100,000	1,700,000	1,800,000
	바닥폴리싱타일	2,190,000	2,250,000	1,760,000	2,110,000	2,110,000	2,380,000	2,320,000	2,360,000	2,370,000
	복도 팬트리	-	1,100,000	-	-	-	1,500,000	-	-	1,100,000
	거실 팬트리	-	-	-	-	-	-	-	-	-
침실	안방팬트리	5,700,000	2,900,000	4,400,000	2,900,000	3,200,000	4,000,000	3,200,000	1,500,000	2,500,000
	알파룸팬트리	-	-	-	-	-	-	2,500,000	2,400,000	-
	침실1팬트리	-	1,100,000	-	-	-	-	-	-	-
	침실2팬트리	-	-	-	1,200,000	-	-	-	1,200,000	-
	침실1불박이장	2,500,000	-	-	-	-	2,500,000	-	-	-
	침실2불박이장	-	-	1,500,000	-	-	2,500,000	2,500,000	-	2,500,000
	침실3슬라이딩도어	-	-	-	-	-	2,500,000	-	-	-
	전동빨래건조대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4,290,000	5,390,000	4,290,000	4,950,000	5,390,000	6,490,000	6,490,000	5,390,000	6,490,000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분양대금 2차 중도금일 (2022. 02. 10)	입주지정일	신한은행	100-033-389858	제일건설(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오입금, 과오납등으로 인한 환불시 별도의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 체결시 발코니 확정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부족등의 사유로 추가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시공은 주방상판+벽체이며 일부세대는 벽체 시공이 제외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②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③ 천장	천장지, 천장 조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④ 일반가구	신발장	-
⑤ 주방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⑥ 욕실	타일(비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 배선
⑦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 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 도어
⑧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⑨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SA	
									5층이하	6층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9,295,000		29,165,000		29,303,000		29,303,000		29,560,000	31,400,000
구분	84SB		84SC		84SD		84SE		84SF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9,323,000		29,680,000		29,924,000		29,205,000		29,970,000	
구분	84SG		84SH		84SI		84SJ		84SK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9,919,000		29,637,000		29,467,000		29,628,000		29,609,000	
구분	84MA		84MB		84MC	84MD	84ME			
	5층이하	6층	5층이하	6층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9,302,000	29,588,000	29,129,000	29,883,000	29,420,000	29,831,000	29,668,000			
구분	84HA		84HB		84HC					
	5층이하	6층	5층이하	6층	5층이하	6층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8,881,000	31,147,000	29,087,000	31,387,000	29,311,000	36,854,000				
구분	101A		101B		101C	101D				
	25층이하	26층이상	25층이하	26층이상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35,937,000	36,674,000	36,088,000	37,398,000	37,398,000	37,116,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 중 85㎡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발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휘트니스, 전시실, 실내체육관, 독서실/방과후교실, 주민운동/휴게시설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B, 공동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1-0055-9
건축주 : 제일건설㈜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공예청일 : 2023년 12월 30일	유효기간 : 2021. 01. 22.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일원	서울특별시(서울광역시)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짜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7층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면적 : 183,800.11㎡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민 편의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비율	국립고려대 교시 제2019-764호, 환경부 교시 제2019-248호
설계자 : 문명동건축사사무소	
모어오우 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한민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B, 공동주택
 2. 신청자 : 제일건설㈜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소음 차등성능	★★★★	20. 연계된 옥외측 포장	*
2. 중형중과음 차등성능	★★★★	21. 자연환기 장치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등성능	★★★★	22. 배연덕트	*
4. 고층초고도로 별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23. 비오물 처리	★★★★
5. 화상설 급배수 소음	**	24. 실내악기 오염물질 저감용 채움식 벽중	★★★★
		25.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	★★★★
		27. 자동문도포설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외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자발	-
3. 폭우시 침수방지 우수	-
4. 불요인 간접항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능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연 재료(EPI)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한 자재의 사용	**
13. 국산물품 사용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저용량가용자재의 보급시설 설치	★★★★
16. 친환경 기기 사용	★★★★
17. 실용 및 유출저하수 이용	★★★★
18. 실용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편리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성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5. 간접환기의 환기계획의 계획	★★★★
6. 우천·우기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실소음도	*
13. 유니버설 디자인 준수	**
14. 방범관련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대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한민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B, 아파트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주-에-1+0195	평가자 : 홍준표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준공연도 : 20240131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36 일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7층	유효기간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관공서
연면적 : 193800.11㎡	건축물의 주민 편의 : 공동주택	설계자 : 문명동 건축사사무소(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84.2	1차 에너지소요량	1*	48	21.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효율		56	
		에너지효율		64	
		에너지효율		72	
		에너지효율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난방	45.6	60.8	45.8
급탕	30.7	44.0	32.2
조명	7.9	5.4	14.8
환기		2.3	0.4
합계	84.2	112.5	99.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종류, 가격,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변경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이사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3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99,819,643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21,098,918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402,376			
	기간이자	33,289,265			용접공사	-		공조설비	-			
	그 밖의 비용	17,940,548			조적공사	1,038,962		난방설비공사	1,402,375			
	필요적 경비	18,443,653			미장공사	2,397,605		가스설비공사	981,663			
	계	369,493,109			단열공사	799,201		자동제어 설비공사	1,402,375			
		방수방습공사			2,477,525	특수설비공사		981,662				
공사비	토목	토공사			5,083,687	공사비	건축	목공사	3,196,805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0,912,578
		흙막이공사			4,121,908			가구공사	3,196,805		정보통신공사	7,785,765
		비탈면보호공사			-			금속공사	1,278,723		소방설비공사	9,349,171
		옹벽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959,042		승강기공사	1,963,326
		석축공사		-	창호공사			4,795,209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7,035,330	
		우수·오수공사		2,747,940	유리공사			3,196,806		이윤	10,260,902	
		공동구 공사		-	타일공사			2,557,444	계	173,636,887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373,969	돌공사			2,717,284	간접비	설계비	6,534,000	
		도로포장공사		3,091,431	도장공사			1,998,004		감리비	3,847,172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686,985	도배공사			1,838,164		일반분양시설 경비	14,611,545	
	정화조시설공사	-		수장공사	3,596,407	분담금 및 부담금	6,520,996					
	조경공사	10,785,662		주방용가구공사	2,397,605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6,457,658		그 밖의 건축공사	2,797,205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80,267,055					
	건축	공통가설공사		3,196,805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2,384,039	계		111,780,768		
		가시설물공사	1,998,004	급탕설비공사		1,963,326	그 밖의 비용	53,557,436				
		지정 및 기초공사	7,112,893	오수·배수설비공사		1,542,614	합계	708,468,200				
		철골공사	5,274,729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1-101-0000500호	566,774,5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자) 건축사사무소 태백	2,825,880,200	
통신	(주) 금라기술단	153,714,000	
소방	(주) 금라기술단	291,720,000	
전기	(주) 대림엠이씨	575,858,282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고덕강일1피에프브이	제일건설(주)	제일건설(주)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02(수기동,제일오피스텔빌딩)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등록번호	756-88-01513	124-86-09636	124-86-09636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견본주택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및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유선 및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외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불박이장류(울선포함), 욕실장, 욕실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고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항,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 및 각종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 색상, 저층부 마감, 옥탑지붕 형태, 지붕장식물,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단지내 시설물 등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항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 실시계획인가(공공공지, 경관녹지, 기부채납도로) 협의에 의해 일부 포장레벨, 지반경사도, 옹벽, 조경계획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입주시 홍보 및 공급시의 명칭(본 광고의 명칭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일부세대에 한함)이며, 테라스는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계약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의 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통보시 이를 거부한다거나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의 경우 제공되는 공간에 대해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테라스 및 다락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동의 일부세대에 한하여 테라스가 설치되며,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테라스의 크기와 형태가 위치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테라스와 접하는 안방, 거실, 침실 등의 세대 창호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부에 난간이 설치될 예정이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에서의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위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테라스에서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인접된 입주자간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바닥은 화강석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일, 데크 등의 외부 테라스 추가 마감은 입주예정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다락(일부세대)은 난방이 되지 않으며 단열 및 내부 마감재 여부에 따라 내부 천정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락층이 있는 세대는 다락층 진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며, 계단의 일부가 복도공간으로 돌출되거나, 계단의 하부면이 복도 공간 또는 욕실 천장 등으로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다락층 세대의 구조에 의한 것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oT관련 사항

- 사업주체와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 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 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복층형 및 다락시공 세대(84SA, 84SC, 84SI, 84SJ, 84SK, 84MA, 84MB, 84MD 84ME, 84HA)의 내부에 설치된 계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게 계획되어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4MA, 84MD형의 상부층에 설치된 다락은 층고가 낮아 거주공간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84A타입의 실외기실 출입문은 사용자 이용성 개선을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의 직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외부에는 장식벽, 기둥 등의 설치로 조망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과 주동을 연결하는 공중가로(보행통로)의 구조 및 재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중가로(보행통로)의 일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장애인 등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 내 기둥 등의 구조물 돌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입주세대는 입주 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1층세대의 전면에 계획된 외부공간은 특정세대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운동시설과 인접 및 연결해 있는 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과 복도등에 계획된 조경시설과, 의자, 운동기구 등의 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과 복도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특정세대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의 공동현관을 지나 세대로의 출입을 위한 복도와 주민운동시설 등의 시설에는 채시, 창호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의 세대는 고층부의 세대보다 외부에서의 접근이 쉬워 방법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고층부의 E/V홀과 연결되어 설치된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특정층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V홀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E/V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E/V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 세대 복도 또는 기타 외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건축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건축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 단자함, 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및 천연가공석(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위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 안방발코니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 각종 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옵션), 주방 싱크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 프레임 및 외부난간의 종류 및 색상은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부 배수배관이 발코니 천정 내 또는 침실 거실의 설비샤프트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상용품목록(가구, 가전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자의에 의거 계약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온도 및 습도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을 통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결로 발생에 대한 별도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및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주방의 주방렌지후드 상부까지는 천정속에 가스배관이 매립되므로 주방천정에 가스누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배관이 노출로 설치되며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가구 폭 및 일부 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TV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면기 후면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되며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비 설치시 1개의 필터가 기본 설치되어 제공되며,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는 주방발코니 상부에는 특별한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세대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저층부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층부 세대는 단위세대 내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층부 세대 : 84A, 84B, 84C, 84D, 101A, 101B, 101C, 101D / 저층부 세대는 상기 8개 타입을 제외한 타입임)
- 세대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의 개폐방향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은 추가품목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5개의 마을 공동체 컨셉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세대별 진출입구간이 매우 상이함으로 반드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황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주변여건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1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탑 형태에 따라 상부 옥탑 구조물, 태양광 설비, 환기시설 등이 노출 시공되며 설치 규모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및 빛 반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 전체단지는 문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명기되어 있어, 단지 출입구 및 단지내부 문주 등의 시설물설치가 불가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트랜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외부와의 열린 단지계획으로 단지(대지)경계부 헬스, 담장, 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 및 광고이미지의 공공공지, 경관녹지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은 저압으로 인입예정으로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최종 협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및 정화조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세대 인근 공용부PD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개수와 종류,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는 선근가든이 설치되어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전 분양 카탈로그 및 건축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은 지하1층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및 E/V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 으로부터 최소 2.1m이상) 단, 지하1층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이용가능 하도록 주차 차로에 한하여 2.7m 차량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정화조 배기탑,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 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등을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E/V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동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E/V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동주택의 기초구조 및 범위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관리동,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건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법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등)설치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횡단보도, 보도, 접자블럭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공사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고덕 차량기지 및 도시철도 관련 시설물 등의 기관이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인근(B2B)에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접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 진·출입 경고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레벨차이로 인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빛공해,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무인택배함은 각 동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터파기공사시 암으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 차량대수를 타동으로 변경배치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이용 차량은 단지 동측 차량 주출입구를 이용하며, 지상주차장에 별도 상가주차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옥상정원부 조경토가 노출 된 상태로 입주민에 제공되어 입주민이 이용·관리하며 유지비용 등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입면에 세대 환기설비에 따른 급/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상부 옥상층에는 이동통신용, TV용 안테나 및 피뢰침 등의 전기, 통신용 시설물이 설치되오니, 숙지하시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 단지 주변에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오니, 숙지하시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에 등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계획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일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 독립된 운영자와 사용대차계약(운영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권을 위임할 예정인바 신청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계약시 관련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1) 상기 사용대차계약(운영위탁계약)에서 사업주체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됨
-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상기 사용대차계약은 기존 약정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주민공동시설 개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명기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단의 약정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음
- 3) 주민공동시설 관리비는 공동부과방식 적용
- 4)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시 상기 조건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5)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계획에 따른 외부인 이용금액 및 운영 안은 운영시점에 따라(물가상승률, 최저시급 인상, 코로나19와 같은 정부지침 등)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주민 개방시설 : 어린이집, 전시설, 공유주방, 공유공방,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워크스페이스, 유기농카페, 바이크스테이션

■ 오수정화조 설치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본 아파트는 고덕 강일 택지조성공사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의 오수정화조 관련 협의에 따라 향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어 신청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여야 하고, 계약시 관련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시 단지 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위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오수정화조가 설치되고 옥상층에 연결되는 배기 덕트가 외부에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 함.
- 오수정화조가 단지 내에 설치 될 경우 오수정화조의 위치는 설계변경에 의해 결정됨.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저층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과 복도 등에 계획된 조경시설과 의자, 운동기구 등의 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공해, 사생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은 일부 지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외부 개방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반드시 주변단지의 입주민과 공유 및 개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사다리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이삿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운영 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조경공간에 근린생활용 실외기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입주 초등학생은 고덕초등학교에 배정 예정이며, 중학생은 강동 송파 2학군 내 중학교에 배정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학생 수용 가능여부 검토결과 인근 학교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나 차후 다른 학교로 이동 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카달로그,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등) 및 견본주택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달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건축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온도조절기, 급/배기디퓨저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등 시공된 제품은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 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외부 마감자재, 옥상 및 외벽의 조형물, 외벽의 줄눈, 식재, 차·보도의 선형, 위치, 거리, 폭,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및 옵션을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 도면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품목만 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옵션포함)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9 고덕강일제일풍경채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ki-jeil.co.kr>

■ 분양문의 : ☎ 02-3431-9760